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경훈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64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김경훈, 구미경, 김규남,
김길영, 김동욱, 김용일,
김용호, 김원중, 김원태,
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남창진, 민병주, 박성연,
박칠성, 박환희, 유정인,
유정희, 윤기섭, 이상욱,
이영실, 이은림, 이종태,
최민규, 허 훈, 홍국표
의원(30명)

1. 제안이유

- 도시숲의 거시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위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(안 제14조)
- 나. 자구수정(안 제6조 및 제2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제10호 중 “지방자치단체의 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각 호”를 “제1호부터 제3호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2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조성·관리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9. (생략)</p> <p>10. 그 밖에 <u>지방자치단체의 장</u>이 도시숲등의 조성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</p> <p>③·④ (생략)</p>	<p>제6조(도시숲등 조성·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----- <u>시장</u>----- ----- -----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,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. 다만, <u>각 호에</u>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4조(위원회의 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제1호부터 제3호까지</u>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
<p>제29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① (생략)</p>	<p>제29조(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·운영 등) (현행 제1항과 같음)</p>